

영등포구의회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용어를 어문규정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통장 1인에 1자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안 제3조)
-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
 -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3조, 제9조 중)
 - “매학년마다”를 “학년마다”로 (제4조 중)
 - “상훈법”을 “『상훈법』”로 (제5조 중)
 -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를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로 (제8조 중)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3.

보 고 자 : 권 오 운